

해외사업의 뇌물 처벌 엄격해졌다

글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세계 각국은 공직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집행하고 국제적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뇌물과 부패는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고, 국제 상거래에서 거래비용을 높여 자원배분의 왜곡과 낭비를 초래하며,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지속가능한 개발에 장애가 된다. 또한 정부조달 계약 시 공무원이 수수한 뇌물은 계약금액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납세자와 소비자가 그 증가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공무수행의 청렴성을 확보하고 국제 상거래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뇌물과 부패는 근절되어야 하며, 효과적 법 집행을 위해 각국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

미국은 1977년 자국 기업의 해외 뇌물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제정했는데, FCPA로 인해 해외시장에서 미국기업의 주주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이에 미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도 부패방지제도를 채택하도록 요구했으며, 그 결과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는 1998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했고, 협약이 발효된 1999년 2월15일부터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국내인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된 뇌물은 몰수 대상이 된다. 또한, 뇌물 제공을 위해 들인 경비는 세무상의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며, 뇌물 제공자는 국제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나아가 외국 정부의 부당한 사업권 취소에 대해 투자 중재를 신청해도 사업권 취득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보호받을 정당한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중재 신청이 각하되거나 승소한 중재 판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독일의 지멘스는 해외 인프라, 의료사업 등과 관련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정부의 조사를 받았는데, 내부 통제 및 기록작성 의무 위반, FCPA 위반 등의 혐의로 2008년 12월 4억5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고 3억5000만 달러의 부당이득금을 환수당하게 되었다. 또한 독일 법원으로부터 2억100만 유로의 벌금을 선고받고 독일 세무당국에 1억7900만 유로를 납부하게 되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추가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기업인이 주한미군 통신 서비스를 수주하면서 미국공군 교역처 간부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발각되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물론 미국에서도 FCPA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및 벌금 5만 달러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각국 정부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각기 처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고 고객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된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건설플랜트 수출 등 해외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데 국제적 부패방지 노력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윤리강령이나 부패방지지침을 정립해 임직원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필요한 경우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회계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부와 기록에 회사의 거래 내역이 자세하고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지 합작법인·자회사에 대한 정기 감사와 감독을 강화하며, 대리인 및 사업 파트너의 평판이나 배경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들과 계약 시 반부패 조항을 추가하는 등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부패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개선조치를 취하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정부와 관계개선 및 사업수주를 위해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을 지원하거나 기술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음성적 뇌물 거래의 유혹을 배척해야 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렴도 순위는 조사대상국가 중 아직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데,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석사, 버클리대 법학박사(J.S.D.), 미국 뉴욕주 변호사. 전문분야 : M&A·사모투자·증권·금융·도산 등. 서울대 법과대학원과 KAIST 경영대학원 M&A 및 금융법 강사.